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**  **《보험회사 지분권 관리방법》 개정에 대한 결정**  보감회 령 2014년 제4호  《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<보험회사 지분권 관리방법> 개정에 대한 결정》을 반포하며,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 주석 샹쥔버  2014년 4월 15일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<보험회사 지분권 관리방법>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.  제7조를 “주주는 반드시 합법적 출처가 있는 자가보유 자금으로 보험회사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, 은행 대출이나 기타 형식의 비 자가보유 자금으로 보험회사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. 단, 중국보감회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”로 수정한다.  이 결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 <보험회사 지분권 관리방법>은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정한 후 다시 공표한다. |  | **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**  **关于修改《保险公司股权管理办法》的决定**  保监会令2014年第4号  　　现发布《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关于修改〈保险公司股权管理办法〉的决定》，自2014年6月1日起施行。    主 席 项俊波  　2014年4月15日 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决定对《保险公司股权管理办法》作如下修改：  　 将第七条修改为“股东应当以来源合法的自有资金向保险公司投资，不得用银行贷款及其他形式的非自有资金向保险公司投资，中国保监会另有规定的除外。”  　　本决定自2014年6月1日起施行。  　　《保险公司股权管理办法》根据本决定作相应修改，重新公布。 |